2021년부터 SQG 재통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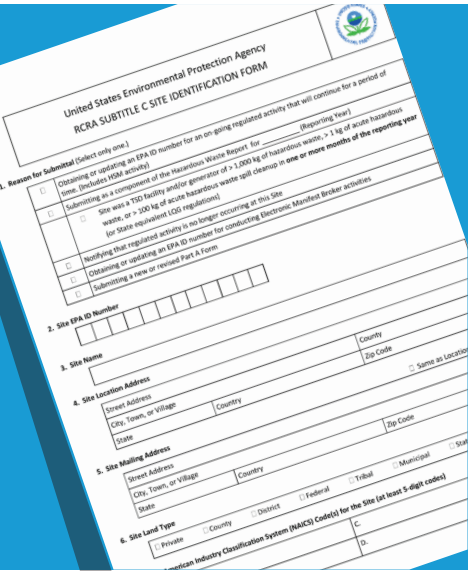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CRA SUBTITLE C SITE IDENTIFICATION FORM

귀하의 유해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처리, 보관 또는 폐기 시설(TSDF)로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규제 변경 사항을 고객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미국 EPA의 유해 폐기물 발생자 개선 규칙에 따라 소량 발생자(SQG)는 4년마다 재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SGQ는 EPA 양식 8700-12라고 하는 RCRA Subtitle C Ac-tivities(사이트 식별 양식)의 통지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거나 이와 동등한* 주정부 양식을 다음 날짜까지 제출하여 통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ptember 1, 2021

더 자세한 정보 및 이 요건에 대하여 귀하의 주에서 유효한지 알아보려면 주 또는 EPA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유해 폐기물 생성 및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epa.gov/hwgenerato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부 주에서는 이 통지에 전자보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SQG 재통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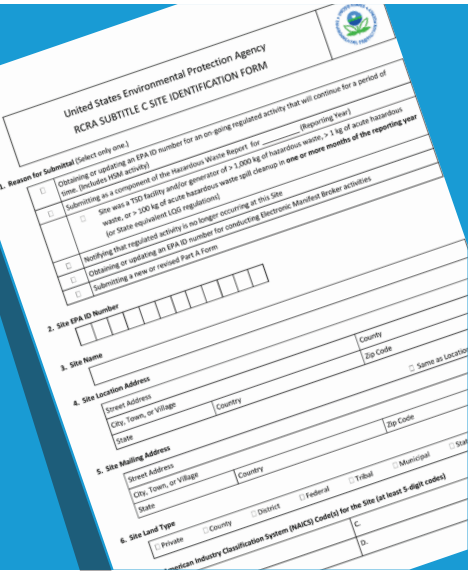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CRA SUBTITLE C SITE IDENTIFICATION FORM

귀하의 유해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처리, 보관 또는 폐기 시설(TSDF)로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규제 변경 사항을 고객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미국 EPA의 유해 폐기물 발생자 개선 규칙에 따라 소량 발생자(SQG)는 4년마다 재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SGQ는 EPA 양식 8700-12라고 하는 RCRA Subtitle C Ac-tivities(사이트 식별 양식)의 통지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거나 이와 동등한* 주정부 양식을 다음 날짜까지 제출하여 통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ptember 1, 2021

더 자세한 정보 및 이 요건에 대하여 귀하의 주에서 유효한지 알아보려면 주 또는 EPA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유해 폐기물 생성 및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epa.gov/hwgenerato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부 주에서는 이 통지에 전자보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